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|--|
| 의안 | |
| 번호 | |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주관부서장이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에 기여하고,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(안 제명)
- 나. 현행 간사인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주관부서 과장”으로 하고, 서기는 “토목과장”을 “주관부서 팀장”으로 조정 (안 제11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(안 전반)

3. 개정근거

- 가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(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)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10. 08.~ 10. 28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11. 05)

다. 「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 를 “서울
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
건설기술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 ” 을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
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자문단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
(이하 “자문단”으로 한다)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
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이하 ” 를 “ 각 1명을
포함하여 15명 이내 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 각호의 1에 ” 를 “ 각
호의 어느 하나에 ” 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
로 한다.

제4조 중 “보궐시”를 “보궐 시”로 하고,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
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회의개최"를 "회의 개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다수결에 의하여"를 "다수결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관계공무원등"을 "관계공무원 등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의견청취및"을 "의견청취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거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11조 중 "각1인을"을 "각 1명"으로, "간사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장이 된다"를 "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"로 한다.

제12조 중 "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"를 "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"로 한다.

제13조 중 "사항이있을"을 "사항이 있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</u> <u>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</u></p> | 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</u> <u>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,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 규정에 의거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,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</u>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| <p>제2조(기능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)</u>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|
| <p>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| <p>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|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~ 2. (생략)
3.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자문단회의)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(생략)

③ 회의는 분야별 위원의 전문적 기술성을 고려하여 의결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사안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의견의 상충·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한다.

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등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문방법)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서류, 도면 및 기타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건설기술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자문단회의)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회의는 분야별 위원의 전문적 기술성을 고려하여 의결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사안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의견의 상충·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.

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문방법)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서류, 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| | |
|---|--|
|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<u>의견청취</u> 및 <u>관련자료 제출</u>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</u>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<u>각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<u>건설교통국장</u>이 되고 서기는 <u>토목과장</u>이 된다.</p> <p>제12조(수당 등 지급)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출장한 <u>위원</u>에 대하여서는 <u>예산의 범위내에서</u>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<u>사항이 있을</u> 경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|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<u>의견청취</u> 및 <u>관련자료 제출</u>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<u>각 1명</u>을 두되, 간사는 <u>주관부서 과장</u>이 되고 서기는 <u>주관부서 팀장</u>이 된다.</p> <p>제12조(수당 등 지급)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출장한 <u>위원에게는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<u>사항이 있을</u> 경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|
|---|--|